양산 삼성파크빌 국민임대 입주자 선착순 모집 [입주자격완화·선착순동호지정·선계약후검증]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7.21.]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 신청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 입주자격 완화 관련 주요사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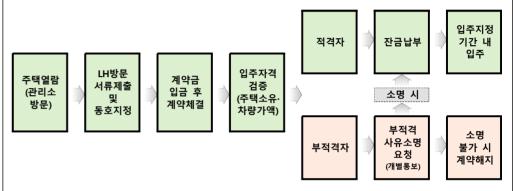
- 금회 모집하는 양산 삼성파크빌 국민임대주택은 잔여공가에 대해 방문접수 순서대로 동호지정 후 선계약 후검증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계약일시에 현장 방문하여 신청자의 동호지정 순번 도래 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며, 당사 지정시간(16시) 내에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진행합니다
- ①당일 오전 10시 전까지 계약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정하여 그 순번대로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하며, ②오전 10시 이후 도착한 경우 오전 10시 이전 접수된 자의 동호 지정이 완료된 후 미계약 세대에 대해 접수 순번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 금회 공고는 아래와 같이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자격요건					
무주택요건	전용면적 60m' 이하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기준 1억6천만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소득요건	소득요건 배제				
총자산요건	총자산요건 배제하되 개별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일 것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미적용					
거주지역 제한 없음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및「국민임대주택의 표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자격 완화
-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배제 공고에 따른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임대조건 미할증, 무주택 및 자동차가액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재계약 가능),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최초 계약 시 자격완화 조건 입주자에 대한 할증 임대조건 미적용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공급형별은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mark>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동차가액)등의 판단기준일은 각 신청자별 신청접수일</mark>이 되며,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당일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7.21.)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요약】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분양권 등 소유 여부, 자동차가액)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소명기간 내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입주 부적격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계약해지 시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 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가 입주적격 통지 후 단순 변심에 의해 입주 전 계약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시에 현장 방문하여 신청자의 동호지정 순번 도래 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공사 지정시간(16:00) 내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계약희망자는 동호지정 당일 16시까지 공사에서 부여하는 계좌로 계약금 입금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미입금 및 계약미체결 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합니다.(현장수납 불가)
-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았으나,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 시 최초 부여받은 동호 지정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대기자는 지체없이 계약할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미계약호수가 남아 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약 2개월 소요)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자에게 정확한 주택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해 샘플하우스 열람 기간을 운영합니다.

※ 세대관람 운영기간 ※	2025.08.06.(수) ~ 2025.11.06.(목) 10:00 ~ 16:00 매주 수, 목요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샘플하우스 운영기간 ※	2025.08.06.(수) ~공가소진시까지 <mark>상시개방</mark>
※ 마늘에무는 돈이기만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신분증 지참 후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샘플하우스 열람이 가능하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동시간대 입장인원을 제한할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최초 입주 시 자격완화 부분은 검증 제외하나, 갱신계약 시 모든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 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mark>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mark>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최초 입주 시 자격완화 부분은 검증 제외하나, 갱신계약 시 모든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 진행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শত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u>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의</u>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학	할 사무소	신청문의
교시당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삼성파크빌	LH 경남지역본부 양산권주거복지지사	경상남도 양산시 청운로 물금읍 358	1600-1004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매입호수	LH 최초입주
삼성파크빌	경상남도 양산시 두전길 42(어곡동 8-1)	5개동 601호	2008.05

2. 모집대상 주택 (방3개, 화장실1개 구조)

	도미늄		세대당 계	약면적(m²)			nii Oi	
단지명	주택형 (m²)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구조/난방	구조/난방 매입 호수	모집호수
삼성파크빌	55	55.6800	20.0419	8.9559	84.6778	복도식/개별	601	12

- 금회 공급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조건

(단위:천원)

	단지명 주택형		기본임	임대조건		보증금 조정 가능조건 (입주시 선택)			
단지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원)	① 감액		② 증액	
		계	계약금	잔금	얼마에프(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원)
삼성파크빌	55	18,198	500	17,698	111,980	4,198	152,810	26,198	65,310

- •위 <mark>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2025.08.26.일 기준</mark>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입주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 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며,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시, 전환 이율 7%),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및 체납관리를 위해 3개월 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신청바랍니다
- 입주일(입주지정기간내 미입주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월 임대료 외에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 예정일 기준이며, 입주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각 신청자별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동차 가액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T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의 범위					
	세대구성	성원(자격검증대상)	Н	고			
	• 신청자						
	• 신청자의 ㅂ	· ·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년 배우자') 포함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			
	• 신청자의 작	배우자의 직계존속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에 포함합니다.						
세대구성원	외국인 배우자	거소신고)을 한 사람	내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직계존·비속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배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로서, 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나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니	사 자격검증 예외				
	■ 예비신혼부		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			

- 5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정하여 1명이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세대로 구성될 2인이 각각 신청하였을 경우 중복신청으로 신청 무효됨.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단, 세대구성원 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 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에 해당하여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소득·총자산은 최초 계약 시 미적용)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자산	총자산가액	• 자산 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자동차가액	• 3,803만원 이하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산정시점은 각 신청자별 신청일이며,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 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검증 대상이 됩니다.(태아는 성격상 자산검증 불가)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완화된 조건으로 전용면적 60㎡이하 국민임대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mark>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으며</mark>,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취소됩니다.

※ (필독) 소득·총자산 완화 대상자 ※

■ 최초 재계약 시부터 소득·총자산에 대한 입주자격 충족 여부 검증하며, 완화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 및 총자산요건 완화모집 입주자의 경우 1회차 재계약 시 소득·총자산 기준 미충족하더라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 시 정상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득·총자산 기준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재계약 가능)

■ 소득-자산 산정방법(자격완화 부분 검증제외, 1회차 갱신계약 시부터 적용)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 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조사기준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F자산 산정 시 산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ΧĮ	ᆉ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선정절차 소요 적 차 장 수 일정 등 상세내용 기간 • 관리사무소를 경유하여 신분증 제시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주택역람 해당 단지 내 주택열람 • 주택역람 일시 (관리사무소 방문) 08.06(수) ~ 11.06(목) 오전10시~오후4시 사전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준비 Д • 자세한 구비서류는 (8 제출서류)참고 제출서류 준비 각 서류별 발급처 ※ 제출서류 미비 시 계약 불가 Ţ • 동호지정 참여 명부 서명한 자에 한하여 명부 서명 동호지정 순번 부여 Д LH양산권주거복지지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2층) • 수번에 따라 잔여세대 중 계약을 희망하는 동호 지정 동호지정(선택) ※ 순번을 호명받았으나, 자리이탈 등으로 계 본인 차례를 놓친 경우 마지막 순번으로 동호지정 야 Д 당 서류제출 후 안내받은 • 제출서류 미비 시 계약 불가 서류제축 및 계좌번호로 계약금 입금 • 안내받은 계좌번호에 계약금(50만원) 입금 계약금 입금 ※ 계약금 미납 시 계약불가 (현장수납 불가) Д • 계약금 입금사실 확인 및 제출 서류 완비 시 LH양산권주거복지지사 계약 가능 계약 체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 동호지정 당일만 입금 및 계약체결 가능 청운로 358 2층) (계약 당일 이후 권리 상실) Д • 신청자의 입주자격 적격여부 확인 자격 검증 (무주택, 자동차가액 기준 충족 여부) 약 4주 Д 우편 안내 •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 소명 부적격자 소명 (부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 소명 불가 시 입주 불가능(계약 해지)

■ 선정방법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체결자를 대상으로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 여부, 자산(자동차)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취소 되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동호지정 당일 ①오전 10시 전까지 접수 장소에 도착하여 동호지정 접수 명부에 서명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일 순번으로 간주하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 ②오전 10시 이후 도착한 경우 오전 10시 이전 접수된 자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미계약 세대에 대해 동호지정 명부 접수 순반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 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 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 시 최초 부여받은 동호지정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자동 신청 무효가 되어 등록명부에서 삭제 및 동호지정 취소처리가 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 시간은 당일 10:00~16:00까지이며, 16:00 후에는 동호지정 접수명부 서명 불가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해지합니다.
- 동호지정 계약 체결 후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는 계약취소 후(해약신청 필요) 위약금 공제 없이 계약금 반환됩니다. 단, 입주자격 적격 통지를 받은 계약자가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공제 후 반환됩니다. (반환 시 이자 없음)

6. 모집일정

■ 모집일정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토·일요일, 공휴일 열람 제외)

주택개방/세대열람	방문신청 및 동호지정 계약	입주통보	장소 (신청 및 계약)
'25. 8. 6.(수) ~ 11. 06(목) 매주 수,목요일 (10:00~16:00) *샘플하우스는 상시개방('25. 8. 6.(수)~)	'25. 8. 12. (화) ~ 11. 11(화) (10:00~16:00)	계약체결 이후 약 2개월 소요예상	LH 양산권주거복지지사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u>(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2층</u>)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당일 동호지정 및 계약금(50만원) 입금 후 계약체결합니다. (당일 지정계좌 이체, 현금수납 불가)
- 인터넷신청은 불가하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동호지정 신청일 당일 오시는 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계약체결합니다.
- 입주안내는 입주자격심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소요 예상)
- 입주자격 심사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부득이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후 중도 포기 동호도 접수기간 내 재 공급합니다.

•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입주안내 예정

• 입주지정기간 60일(입주 전까지 잔금 납부)

Д

잔금납부 및 입주

개별안내

7. 신청방법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각 신청자별 신청일 기준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번호 13자리, 이름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 요망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내 용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서식)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도양식 참고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1통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세대구성원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mark>상세</mark>)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1통

■ 추가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부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구민센터	1통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 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9. 공통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임대조건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7%(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3.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일반)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 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갱신시-소득·총 자산 완화자격)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23.1.16)에 따라 소득·총 자산 자격요건 완화 계약자의 경우 조건을 불문하고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1회 추가로 허용한니다
-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핰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하 금액에서 핰증됩니다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40% 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이 주택은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당첨에서 제외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양산권주거복지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격소명 및 입주 안내 등 연락 및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에게 있습니다.

계약인
입주인
단지 [[] 시설이
기타시

- 계약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류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니다
-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자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인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인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금은 인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혐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워활히 유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현조를 하여야 한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용등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 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워칙으로 하며,LH홈페이지-LH청약플러스-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

장치)등의 관련 사항은 단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명	높 이(m)
삼성파크빌	2.1

신청접수 관련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2025. 07. 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붙임1]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 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축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